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88호 / 주간 33호

2024. 8. 14.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현행 상속세 체계를 비판하며 개선할 방향성	표지
CEO의 경영 산책	우리 회사 10년 후 지속될 수 있을까?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부동산 매각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 부동산 임대사업자 원룸에 소위 말하는 옵션(세탁기, 냉장고, 티비)의 계정과목을 비품VS건축물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인근 마을에 제공할 식대의 회계처리 문의 - 영세울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5 6
눈에 맞는 절세 미인	12월말 결산법인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있음	7
매일 절세 재무 요점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9 10
직장인 Survival	열등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법 5가지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 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3299, 2024.01.31) -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 (서면법규재산-2110, 2023.10.16)	12 13
세정 뉴스와 해설	국세청, 위메프·티몬사태 영세사업자... 부가세 700억원 조기환급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리스기간 종료에 따라 자산 반환시 감모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9
세무 정보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보니 '탈세단말기'	15 19 38 41
노무 정보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47
세무 환율 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4

# 우리 회사 10년 후 지속될 수 있을까?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1990년 이후 세계는 무역을 통한 세계질서 변화라는 흐름 속에 성장했다. 세계화는 급속히 발전해 세계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의 노선으로 분열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을 심화시켰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으며, 세계화 진전을 저해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하는 국제 안보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자유무역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유럽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 (middle-income trap)'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 (Investment), 기술 도입 (Infusion), 혁신 (Innovation) 3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 '2024 개발보고서' 성장슈퍼 스타 한국: 기술 혁신주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 8.1.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정부는 '3i전략'이 작동 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 엘리트와 지배적 기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지 않게 규율하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고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과보호나 대기업을 옥죄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인적투자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이동성을 제고 하는 등 혁신을 위한 사회적기반을 구축 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가 중진국에게 중대한 도전 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적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Pwc의 글로벌 CEO조사\*에 의하면, 한국 CEO의 75%는 자신의 기업이 그대로 운영된다면 10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글로벌 평균(45%)과 큰 격차를 보이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만큼 혁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CEO들은 혁신의 주요 동인(기술·고객 선호도 변화·정부 규제·기후대응 등)이 앞으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향후 3년간 기업 경영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올 요인으로 정부 규제(53%)와 경쟁업체 활동(53%)을 꼽았다. 한국 CEO는 다른 나라보다 기업 생존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의 CEO일수록, 기업 생존이 더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끊임없는 혁신의 시대에서 성공하기. 2024.1, p. 3-7.

한국 CEO는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외부적 요인으로는 규제 환경(74%), 공급망 불안정(66%), 인프라 부족( 51%)을 들고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회사의 기술역량 부족(70%), 사내기술인력 부족( 70%), 단기성과 중심 운영( 64%), 제한된 재정자원( 61%), 회사의 관료적인 절차( 50%), 내부 이해관계자의 지원부족 ( 49%), 이사회 지원부족( 32%) 분석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CEO일수록, 본인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더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혁신의 방안을 실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공급망 모델 변화, 새로운 가격 모델을 구현한 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ibid, p. 27.).

- 한국 CEO는 업무 효율성이 낮은 일상적 영역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더-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더 나은 업무 방식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혁신과 관련된 활동( 예: 신기술 개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M&A 등)과 수익률 사이에는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의 혁신 방안은 각 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산업 상황, 경쟁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회사 자원 재분배, 합작투자 등을 통한 비즈니스 생태계 포용은 CEO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혁신 방안이다.

- 글로벌 CEO들은 업계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작 투자 및 제휴 등을 통해 경쟁사 대비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더 높은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과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오늘날, 혁신은 경영층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를 예측하고 수용하지 않는 기업은 진부화된 비즈니스 모델에 갇혀 경쟁사의 발전에 뒤처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Deloitte, 혁신을 수용하라: 잠재력을 이끄는 이사회 역할, 2024. 7. 23, p. 10). 경영층은 리스크를 관리하며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경영층이 혁신의 지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조직을 역동적으로 이끌 수 있다. 혁신은 성장전략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전에 직면한 조직의 성공과 회복탄력성을 형성하는 필수요소이다.

산업이 융합되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혁신에 실패하는 것이다(ibid, p.3). 경영층의 역할은 전통적인 지휘, 감독을 넘어 혁신과 전략적 위험 평가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기술혁신을 활용하여 조직이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상하고 재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2일 (금)	8월 5일 (월)	8월 6일 (화)	8월 7일 (수)	8월 8일 (목)
미	달	러	(USD)	1365.90	1372.80	1360.60	1372.20	1376.40
일	본	엔	(JPY)	915.70	938.67	937.18	949.49	940.13
영	국	파운	(GBP)	1739.27	1756.29	1739.73	1741.60	1746.31
캐	나	다	(CAD)	983.90	989.58	985.58	995.47	1000.84
홍	콩	달	(HKD)	174.79	175.85	174.67	176.05	176.55
중	국	원	(CNH)	188.51	189.78	190.72	192.03	191.57
유	로	화	(EUR)	1473.74	1497.38	1490.67	1499.61	1504.34
호	주	달	(AUD)	887.22	893.49	885.95	894.40	897.28
싱	가	폴	(SGD)	1021.96	1034.75	1026.98	1035.39	1037.38
말	레	이	(MYR)	298.95	305.24	307.48	306.71	306.10

## 부동산 매각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Q** 회사의 정관에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수'에 대하여 특별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회사소유의 본점소재지(지산건물 1개층)를 매각하고 임대사무실을 구해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100억 정도이고 K-GAAP에 의해 자산을 인식하고 있고 3년 6개월 전에 토지건물포함 53억정도에 매입한 물건입니다.

그동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진행했고, 현재 장부상 가치는 토지건물 합산 48.7억 정도입니다. 23년 결산결과 자산총계는 98.64억원이어서 2분의 1에는 살짝 미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관규정을 준수했을 때, 매각시 주총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장부상가치로는 48.7억이지만 23년도 감평결과와는 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장부상가치로 그대로 판단해서 주총결의가 필요없는 것인지, 아니면 감평결과를 반영해서 장부상 자산가치의 50%를 상회하니 주총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A**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2분의 1 이상을 판단할 때 장부가액 또는 시가(감정가액) 중 어떤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정관에 세부적 규정이 없다면 정관해석에 대한 법률상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법률해석상의 문제가 되므로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세무회계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장부가액보다는 감정평가액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 원룸에 소위 말하는 옵션(세탁기, 냉장고, 티비)의 계정과목을 비품VS건축물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Q**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계획하에 건물의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축시에, 옵션을 미리 설정하여 반영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계획하에 건물의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 및 건축한 이후에 옵션을 추가한 경우.

위 두 개의 케이스 상에서 [옵션]이 비품과 건축물 둘 중에 어느 계정과목에 더 타당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세탁기, 냉장고, 티비 등의 옵션항목은 내용연수가 건물과 다르고 추후 개별로 교체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품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인근 마을에 제공할 식대의 회계처리 문의

**Q** 인근 마을에 음식·상품 등을 사서 추석선물 등으로 드릴 예정인데, 영수증 발행이 안되기에 기부금 처리도 어려울 것 같고, 거래처가 아닌데 접대비로 처리시 인정되나요? 복리후생비는 아니지요?

**A** 업무관련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업무연관성이 없으면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Q** 다자간 무역거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국내사업자 갑은 국외사업자 B에게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자 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자 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을과 병 모두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A** 을은 갑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고, 갑으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를 기초로 병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모두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있음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은 1년의 사업연도동안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이다.

따라서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계산하여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나, 다음에 열거된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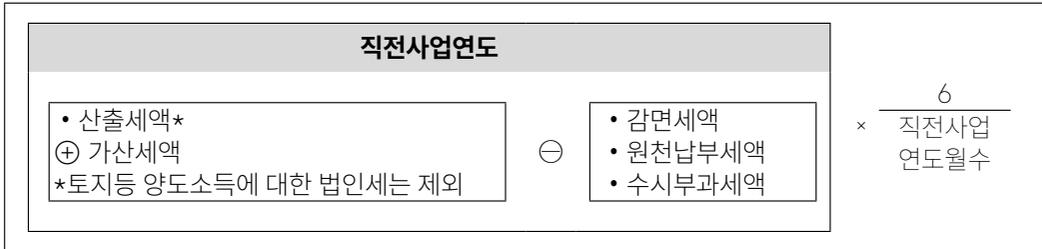
- ①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②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③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⑥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⑦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⑧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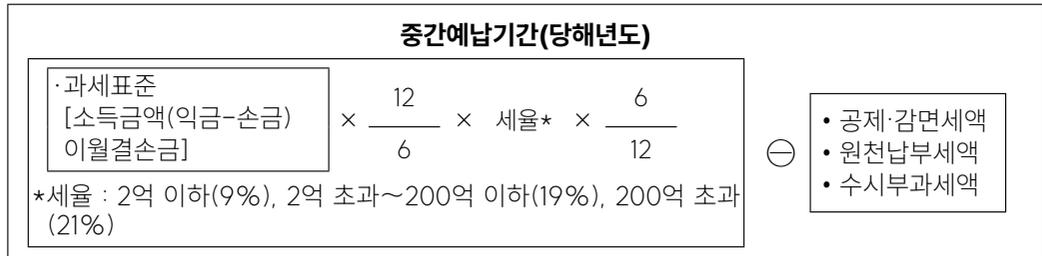
### ① 직전연도 납부세액기준(흑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다시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적자법인)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가결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시 신고 납부한다.



### ③ 예외의 경우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3.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 중간예납 미납에 따른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소납부세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이때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1일당 0.022%를 곱하여 계산한다 (가산세 계산산식 = 미납부세액 × 1일 0.022%).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2025년부터 3년간 한시적용

	대상	내용	공제율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	작년 3년 평균 대비 주 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공제	5%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 업 개인주주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 과세 소득금액 비율	분리과세자 9% 종합과세자 25%

### 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현행	개정안	
	일반	일반투자형	국내투자형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연 4000만원 (총 2억원)	연 4000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제한	가입제한	가입허용 (비과세없이 14% 분리과세)

# 수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1억~5억	20%	1000만	2억~5억	20%	2000만
5억~10억	30%	6000만	5억~10억	30%	7000만
10억~30억	40%	1억6000만	10억 초과	40%	1억7000만
30억 초과	50%	4억6000만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액(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  
 ※상속세액 = 과세표준×상속세율 - 누진공제액

# 목

## 상속세 주요 공제 항목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액(30억원) 범위에서 공제 위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 공제
인적공제	자녀(태아포함) 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태아포함) 공제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65세 이상) 공제 5000만원 장애인공제 1000만원×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연수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의 100%(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한도 2억원)

※ 기획재정부



## 열등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법 5가지

### 1 합리적인 기대를 한다

타인을 도울 때 당연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큰둥한 반응이 올 수도 있다. 이때의 실망감은 자기 혼자 서로의 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멋대로 기대한 탓에 비롯된 감정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반드시 합리적인 판단과 기대가 필요하다.

### 2 실수와 잘못을 곱씹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들은 늘 자기비하와 자책을 반복한다. 별것 아닌 작은 실패까지 마음에 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탓하고 우울해한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해야겠지만, 자책해 봐야 해결되는 것은 없다. 자기비하와 자책은 영혼을 갉아먹는 악습이니 반드시 멈춰야 한다.

### 3 많이 칭찬한다

자신감이 부족하면 남들이 아무 뜻 없이 쳐다보거나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해도 괜히 기가 죽고 우울해진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뛰는 등 신체반응까지 일어난다. 평소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소 과장을 섞어 칭찬하고 응원해 보자. 또 힘들더라도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자.

### 4 적극적으로 반격한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속이 상해 전전긍긍하면서도 그와 관계가 나빠지거나 끊어질까봐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자신을 향한 부당한 비난과 질책에 제때 반격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존중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다.

### 5 일상에 변화를 준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성격을 알고 있으며 일종의 부담으로 느낀다. 만일 갖가지 노력을 다했는데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일과 생활환경을 한 번 바꾸어보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리스기간 종료에 따라 자산 반환시  
감모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  
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  
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  
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3299, 2024.01.31

### 질 의

- 사업자가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재리스계약 종료 시 귀금속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모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리스계약 종료에 따라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리스료 외에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단가를 적용한 감모대가를 재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809, 2024.02.29

### 질 의

-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해수어류를 키우기 위해 취·배수관을 설치하고 바다 해수를 취·배수관을 통해서 육상 수조내의 해수를 순환시키며,
  - 해당 취·배수관은 T 또는 L자형 이음관 등 자재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 부위는 플랜트 자재로 고정되어 있음

\* 본건 기자재 형태

### 질의

-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취·배수관을 연결 및 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해당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재인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2110, 2023.10.16

**질 의**

-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특법 85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장 이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의 3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라 함)를 적용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

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의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제2항에 따른 '해당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전환 후 타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주식등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해당 공장의 양도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폐지(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서면국제세원-2310, 2023.12.06

**질 의**

-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상품을 일본 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상표권, 상품관련 지적재산권,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위메프 티몬사태 영세사업자... 부가세 700억원 조기환급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8일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700억원을 조기환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일반환급으로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 대해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908개 조기환급 신청자들에게는 지난 2일부로 환급금(178억원)이 지급됐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미납자의 납부연장 신청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중인 피해 사업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경우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한,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압류 재산 매각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 올해 8월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대주주 기준 10→50억원으로 완화

올해 8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신고대상자에 대해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분을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신사 문자서비스(9일), 우편(13일) 순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 납세자가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도록 했다.

'세율 선택 도우미'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 및 손익통산 방법,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각 안내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 30원 결정고시...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으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총 11차례 전원 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최임위는 같은 달 11일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 20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다.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국세청, 202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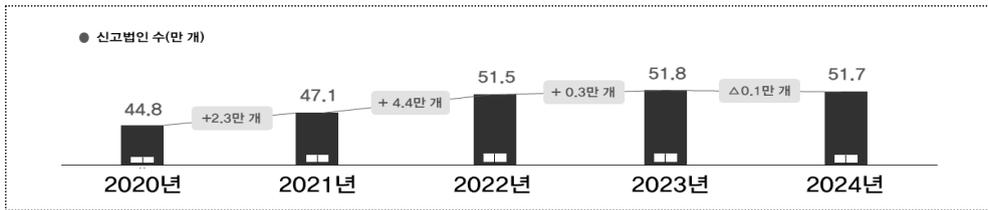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입니다.

### 【최근 5개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기준 및 납부시기】

구분	내용
분할납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li> <li>▪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li> </ul>
분할납부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10월 2일까지)</li> <li>▪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11월 4일까지)</li> </ul>

□ (신고편의)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세정지원)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합니다.
  -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경로 :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신청/결과조회 → ④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⑤ 민원명 ‘납부기한’ 선택

## 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 (중간예납 방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4년 1월 ~ 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중간예납 방식(①② 중 선택)**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2을 납부

$$\text{중간예납세액} = \text{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times 50\%$$

② 가결산 방식 : 상반기('24.1. ~ '24.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

$$\text{중간예납세액} = \left[ \begin{array}{l} \text{상반기 과세표준} \times 2 \\ \text{[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 \ominus \text{손금)} \\ \text{-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end{array}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frac{6}{12} - \begin{array}{l} \text{상반기} \\ \text{·공제·감면세액} \\ \text{·원천징수세액} \\ \text{·수시부과세액} \end{array}$$

□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선택

\* 일반 경로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참고 2. 홈택스 미리채움·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개요**

□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참고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

구 분	선정기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수출 중소기업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22년 대비 '23년 매출이 감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li> <li>•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li> <li>•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 '수출의탑 수상기업'</li> <l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li> </ul>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닐 것

□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 (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 신고기한인 9월 2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4일)으로 출력

-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

####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분할납부 시기	'24년 10월 2일 → '24년 12월 2일	'24년 11월 4일 → '25년 1월 6일

#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 국세청, 2024. 8

□ (개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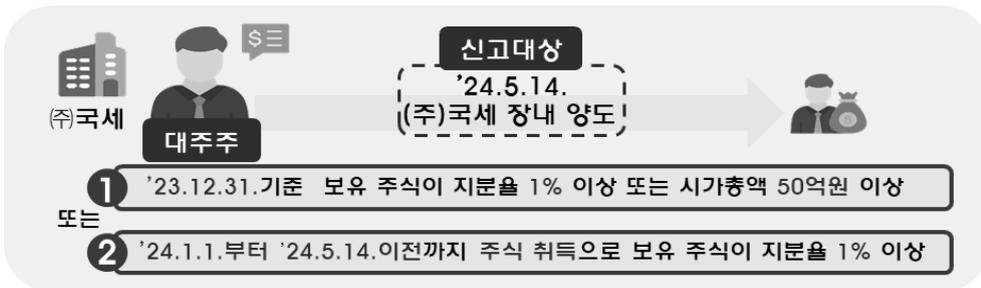
□ (신고대상) ❶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❷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입니다.

###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한국거래소 시장	계좌간이체	K-OTC 시장	계좌간이체, 종이주권
대 주 주	○	○	○	○
소액주주	X(❶)	○	○ X(❷)*	○

-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 이번 예정신고('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 (주)국세는 코스피에 상장한 12월말 결산법인

□ (사전안내) 8월 7일(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카카오톡 우선발송(8.7.)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 발송(8.8.), 통신사 문자서비스(8.9.), 우편(8.13.)순으로 안내 예정

□ (신고도움)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가이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 제작하였습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 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참고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구분	내용
신고 대상	□ (대상) '24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 (과세제외)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p>대주주 기준 (과세대상 판단시)</p>	<p><input type="checkbox"/>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24.1.1.이후 양도분)</p> <table border="1" data-bbox="314 441 1235 603">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대주주</th> </tr> <tr> <th>코스피</th> <th>코스닥</th> <th>코넥스</th> </tr> </thead> <tbody> <tr> <td>지 분 율</td> <td>1% 이상</td> <td>2% 이상</td> <td>4% 이상</td> </tr> <tr> <td>또는 시가총액</td> <td colspan="3">50억 원 이상(공통)</td> </tr> </tbody> </table> <p>*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p>	구 분	대주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구 분	대주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p>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23.1.1. 이후 양도주식)</p>	<p>&lt;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합산대상 범위&gt;</p> <table border="1" data-bbox="314 754 1235 1234"> <thead> <tr> <th colspan="2">상장법인(소득령 §157㉔)</th> <th colspan="2">비상장주식(소득령 §157㉕)</th> </tr> </thead> <tbody> <tr> <td>최대주주 ○</td> <td></td> <td>최대주주 ○</td> <td></td> </tr> <tr>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li> <li>4촌 이내 혈족</li> <li>3촌 이내 인척</li> <li>경영지배관계</li> <li>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li> <li>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li> </ul> </td> <td colspan="2">좌동</td> </tr> <tr> <td>최대주주 ×</td> <td></td> <td>최대주주 ×</td> <td></td> </tr> <tr> <td colspan="2">합산대상 없음</td> <td colspan="2">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td> </tr> </tbody> </table> <p>*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p>	상장법인(소득령 §157㉔)		비상장주식(소득령 §157㉕)		최대주주 ○		최대주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li> <li>4촌 이내 혈족</li> <li>3촌 이내 인척</li> <li>경영지배관계</li> <li>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li> <li>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li> </ul>		좌동		최대주주 ×		최대주주 ×		합산대상 없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상장법인(소득령 §157㉔)		비상장주식(소득령 §157㉕)																			
최대주주 ○		최대주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li> <li>4촌 이내 혈족</li> <li>3촌 이내 인척</li> <li>경영지배관계</li> <li>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li> <li>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li> </ul>		좌동																			
최대주주 ×		최대주주 ×																			
합산대상 없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p>세율</p>	<p><input type="checkbox"/> 세율 10% ~ 30%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335 1372 1220 1499"> <thead> <tr> <th colspan="2">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th> <th colspan="2">소액주주</th> </tr> </thead> <tbody> <tr> <td>과세표준 3억 원 이하</td> <td>20%</td> <td>중소기업 주식 양도</td> <td>10%</td> </tr> <tr> <td>과세표준 3억 원 초과</td> <td>25%(누진)</td> <td>그 외 주식 양도</td> <td>20%</td> </tr> </tbody> </table> <p>*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p>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누진)	그 외 주식 양도	20%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누진)	그 외 주식 양도	20%																		
<p>신고 납부 기한</p>	<p><input type="checkbox"/> (신고) '24. 9. 2.(월)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p> <p><input type="checkbox"/>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p> <p>○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p>																				

## 참고 2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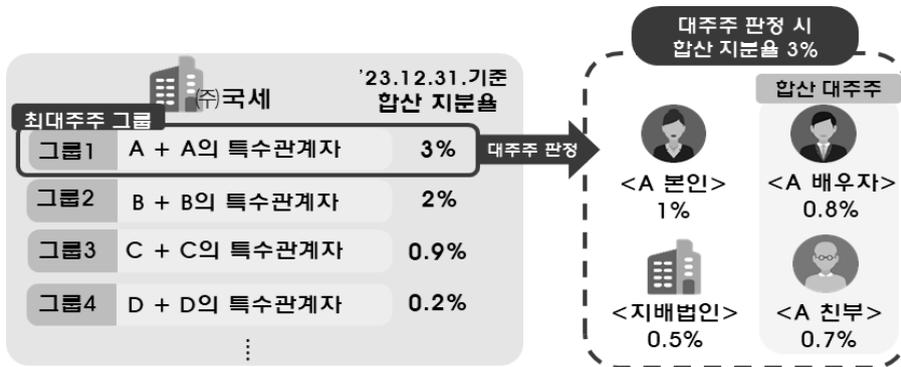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소득세법 시행령 § 157④1,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란 |

- ①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의 지분을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 ②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 모두 대주주
-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

\* 주주 1인 등,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표1> 참고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여 지분을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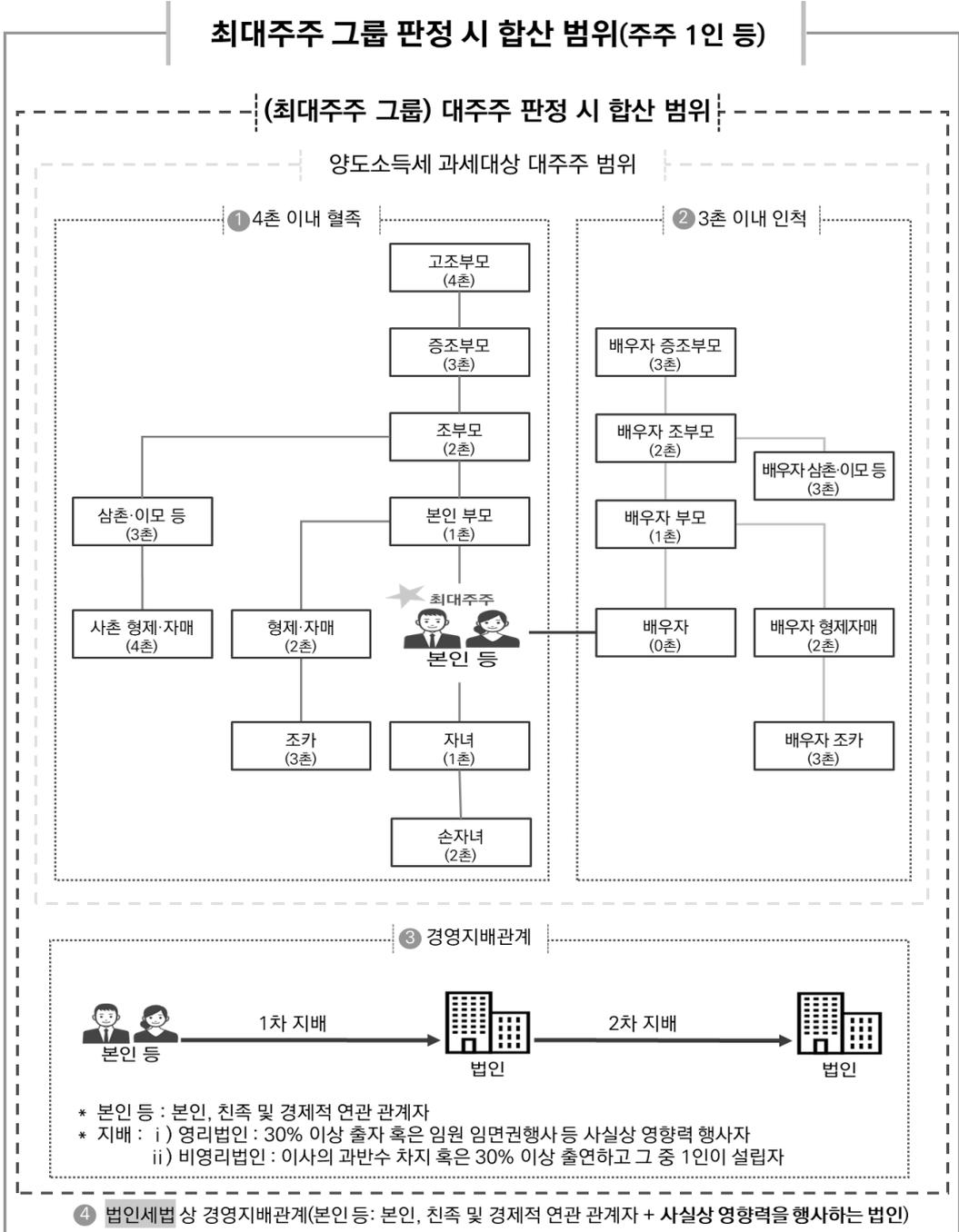


\* (주)국세가 코스피 상장 12월말 결산 법인

- ① 주주 A가 기준이 되는 그룹1은 (주)국세의 ‘주주 1인 등’ 그룹 중 지분을 합계가 최대인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그룹이 되고
- ② A와 기타주주의 지분을 합계는 3%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1%)을 만족
- ③ A와 A의 배우자, 친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이며, 배우자와 친부는 본인기준 대주주 요건 미달이나 합산에 의해 대주주가 됩니다.

Ⅰ <표1> 합산 대주주 판단 시 단계별 특수관계자 범위

최대주주 그룹 판정 시 합산 범위(주주 1인 등)



(1단계) 최대주주 그룹 판정 시 합산범위(“주주 1인 등”) = ① + ② + ③ + ④

(2단계) 최대주주 그룹 선정 이후 대주주 판정 시 합산범위(주주 1인+기타주주) = ① + ② + ③

(3단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최대주주 그룹 합산에 의한 대주주 범위」 = ①+②

### 참고 3 양도물건 종류「세울 선택 도우미」서비스 소개

-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울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24.8월)
  - ①양도물건 종류를 4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 ②항목별 해당 여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도움자료를 제공

#### | 「세울 선택 도우미」 항목별 도움자료 |

항목	도움자료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상장주식 여부	양도일자 기준 양도 주식의 상장 여부 제공
대주주 여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여부 자료 제공
보유기간	양도일과 취득일을 입력하면 자동계산

- ③조회 버튼을 누르면 양도물건 종류와 세울구분 코드 자동 적용

#### | 「세울 선택 도우미」 서비스 화면 |

< 양도물건 종류 세울 선택 도우미 > ※ 아래 항목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초기화

중소기업 여부  확인  부     
 상장주식 여부  예  부     
 대주주 여부  예  부     
 보유기간  조회

※ 위 자료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구축 시기에 따라  
 상장주식·대주주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물건종류	<input type="text" value="[22] 상장주식(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도움말
* 세울구분	<input type="text" value="[63] 중소기업외 대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도움말
* 주식종류	<input type="text" value="-선택-"/>	도움말

- (사용 방법) 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도움자료 조회 ➡ ② 항목별 여부 선택 후 [조회] 클릭 ➡ ③ 양도물건 종류, 세울구분 자동 적용\*

\*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가 양도물건 종류나 세울구분을 직접 정정 가능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묻는 질문

##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 1.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 일 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 국외주식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기 예정신고분과 합산신고하거나 확정신고(다음해 5월)를 하여야 함
-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시설물이용권 부여주식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구 분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한 (예: 양도일 '24. 3. 18.)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4. 9. 2.*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4. 5. 31.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대상 아님)	'25. 6. 2.

\* '24. 8. 31.(토), 9.1.(일)이므로 다음날 9.2.(월)까지

###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 157④, ⑤)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요건 》

(지분율, 시가총액)

구 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24.1.1.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5억원 이상	1% 또는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원 이상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원 이상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함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

구 분	상장법인	
	합산대상 특수관계인 ( '23.1.1. 이후 양도주식 )	최대주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li> <li>4촌 이내 혈족</li> <li>3촌 이내 인척</li> <li>경영지배관계</li> <li>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li> <li>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li> </ul>		
최대주주 ×		
합산대상 없음		

- 상장법인 대주주는 장내/장외거래 모두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장외거래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3. 완화된 대주주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기준 중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 “50억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따라서 '24년 8월 예정신고('24년 상반기 양도 주식)부터 적용하여 신고함

**4.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주식양도 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주식 양도에 대하여도 대주주로 보는 것인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함

《 관련 예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 상담 4팁-686(2004.05.18.)

☞ 대주주 해당 여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봄

\* ('23년 양도 대주주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비상장주식 4% 이상

**5.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인데,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당해연도에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는 것인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대주주 해당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 관련 예규 및 판례 》

자본거래관리과-3899(2019.12.19.)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6. 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 대금을 청산한 날(결제일)이 원칙이며, 대금청산前 명의개서를 한 경우 및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봄(소득세법 제98조)
  - 상장주식 장내거래의 결제일은 (T+2)일 임(T: 체결일)
-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 관련 예규 및 판례 》

☞ 조심2012서530('12.5.31.) 선입선출법

주식의 취득시기는 증권회사(후입선출법)보다 납세자(선입선출법)가 거래내역을 기장한 장부상의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함

\* 조심2011중0923, 2011.6.2., 조심 2011서0957,2011.6.3.외 다수

☞ 대법원 2007두2432, '07.4.13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증권 회사의 주식 입출고 처리방식을 통해 취득시기가 확인된 경우 후입선출법 적용이 정당함

\* 후입선출법 적용 시 중소기업외 대주주의 1년미만 단기양도(세율 30%)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

7.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 판단 기준은?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대주주 요건 지분을 및 시가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기준을 적용
  - 시가총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평가액을 적용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 제2호)
- 또한, 해당 사업연도 중 코스닥 법인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기준에 따름

《 관련 예규 및 판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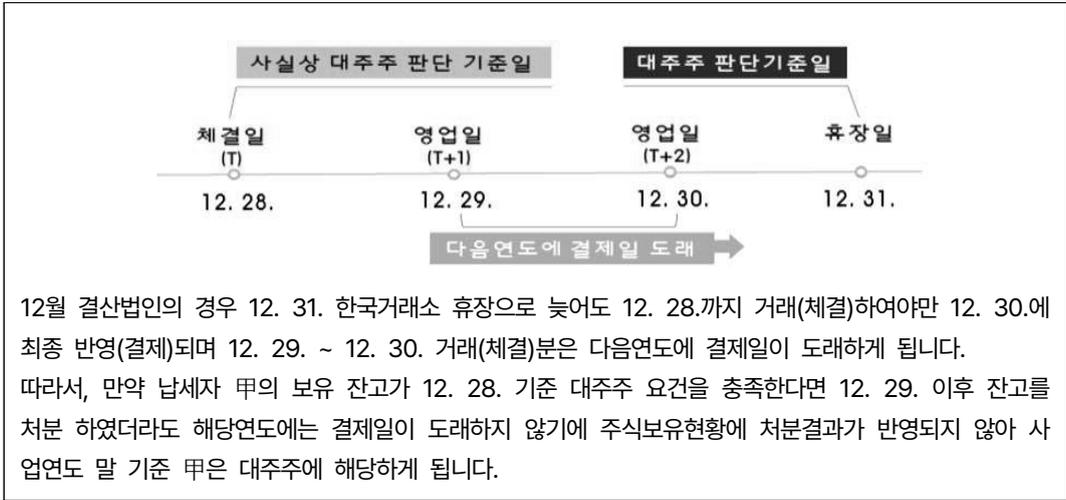
부동산거래관리과-627(2010.4.30.)

☞ 신규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시가총액기준 적용방법

코스닥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인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5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총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함

8.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유의하여야 함



예) '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2.12.30.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자인 '22. 12. 27. 계약체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9.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요건 판정기준일은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임
  - 또한,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신주를 교부받아(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 후 남은 분할법인의 주식(구주)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임
- 따라서, 구주를 분할등기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현황으로 대주주를 판단함

**10. 양도일 현재 이혼한 경우 대주주 판단은 ?**

-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함에 유의

**1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 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4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한국거래소 시장	계좌이체	K-OTC 시장	계좌이체, 종이주권
대 주 주	○	○	○	○
소액주주	X	○	○ X(중소·중견)	○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구 분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한 (예: 양도일 '24. 3. 18.)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4. 9. 2.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4. 5. 31.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대상 아님)	'25. 6. 2.

-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함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함

**12.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함
- 한국장외시장(K-OTC) 소액주주는 소유 주식이 지분을 4%이하, 그리고 시가총액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24.1.1.이후 양도분부터)

**13.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14.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 '20.1.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 및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함('19.12.31.까지 양도분은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였음)

- 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함

**15. 국내주식 양도소득 세율은?**

- 주식은 중소기업·대주주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특정주식·부동산과 다보유법인주식·시설물이용권 부여주식의 경우 부동산 등에 적용하는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됨

《 '20.1.1.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표 》

대주주(상장·비상장)		소액주주(상장 장외·비상장)	
과세표준 기준*	20~25%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1년미만	30%	중소기업 외 주식	20%

-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 국내주식: 10% , 20%, 20%~25%, 30%
- 국외주식: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대주주, 기타자산)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를 해야함
-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누진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을 적용

**16. 국외주식을 2024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5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됨

**17. 2024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통산하여 합산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함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신고·과소신고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8. 신고대상 기간동안 손실이 났는데도 신고대상인지?**

-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가 해당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음(소득세법 제 105조 제3항)

**19. 당해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 하여 그 차손 금액만큼 내년에 이월공제 할 수는 없음

**20-1. 상장법인 대주주 해당 주식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20-2.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 통산이 가능한 지?**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의 손익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소액주주 주식은 손익은 서로 통산할 수 없음
-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며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하여야 함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양도차손 통산방법 》**

- ①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구분하여 각각 통산(같은 그룹내의 자산끼리만 통산)
    - ex)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차손을 토지의 차익과 통산하지 못함
  -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통산
    - ㉠ (1차 통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공제
    - ㉡ (2차 통산) 1차 통산 후 남은 차손을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 \* 1차 또는 2차 통산 후 잔여 차손액은 연도이월 불가

\* 결손금 통산 계산예시

자 산	토지	A주식(대주주)	B주식(대주주)	C주식* (소액주주)	D주식(대주주)
세 율	누진세율	20%	20%	-	30%
양도소득	500	△300	100	300	300
(1차)통산 : 동일세율		100	△100		
(2차)통산 : 다른세율		200		0	△200
과세대상 소득	500	0	0	0	100

\* C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 해당)

→ C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이므로 결손금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결손금 통산 후 과세대상 소득은 토지분 500과 D주식 100임

**21.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상반기에는 과세표준이 3억원에 미달하였으나, 하반기 양도분 신고 시 상반기 양도분을 포함하면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신고방법은?**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양도 시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25%를 적용하여 하반기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확정 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기 납부한 세액은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함)

**22. '20.1.1. 이후 중소기업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1년 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은?**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 대주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여 누진세율(20~25%) 적용대상임에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3. 무신고시 불이익은?**

-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납부기한 경과 1일마다 미납금액 × 22/100,000)등이 추가로 고지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또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소액주주의 장외거래 포함)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 24.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여부 및 무신고시 불이익은?

-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 국세청 홈(손)택스 이용방법

### 25.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납부 방법은?

-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
  - 주식양도신고우미 자료 중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이드」 상세내용 기재
  -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우측 (바로가기)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26.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비회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서비스를 제한 없이 받아 볼 수 있음

### 27. 신고 또는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까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다만, 세금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터넷뱅킹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야만 납부할 수 있음

### 28. 세금납부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및 손택스 이외에도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 ① 인터넷지로(<http://www.giro.kr>)에 접속하여 납부
  - ②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 ③ 카드사에 접속하여 카드론 대출을 통해 납부

- ④ 텔레뱅킹(ARS, 평일 09:00~17:00)
- ⑤ 전국 어느 은행이나 ATM에서 납부 가능
- 신용카드는 홈택스 및 손택스는 물론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http://www.cardrotax.or.kr> 매일 00:30~23:30),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직접 내방하여 납부가 가능함
  -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 시에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납부대행수수료가 있음
- 납부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검색창에 “납부서”로 검색하여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 \*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수납기관용)/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29. 홈택스 및 손택스의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란?

- 주식 양도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납세자 등 어느 누구라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신고지원서비스로
  - 찾아보기 쉽게 세법Tip 등 6가지 주제를 색인표(Tab)로 구분하여 게시\*
  - \* 홈(손)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우측 (바로가기)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30.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누락한 경우에는 조회 되지 않으며, 거래구분 중 계좌간 거래 내역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권사에 문의)
-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본인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상담시 특히 유의하기 바람

### 31.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이용 대상은?

- 상반기(하반기)에 거래횟수 3회 이내로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가 이용 가능함

### 32. 간편신고 대상(거래횟수 3회 이내)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예정신고 대상기간인 반기별로) 양도한 주식 종목 수, 거래상대방(양수인), 양도일, 취득일을 기준으로 거래횟수가 3회 이내에만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3회를 초과하면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음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동일인에게 동일날짜에 양도한 경우라도 거래횟수를 각각 1회로 계산

\* 사례1) 동일 종목을 같은 날 양수인 1인에게 양도

구분	양수인	양도일	주당양도가액	취득일	주당취득가액	거래횟수
A주식	최한국	**4.10	10,000	**1.05	7,500	1
A주식	최한국	**4.10	10,000	**2.15	8,000	2
A주식	최한국	**4.10	10,000	**3.11	8,000	3

\* 사례2) 동일 종목을 같은 날 양수인 1인에게 양도

구분	양수인	양도일	주당양도가액	취득일	주당취득가액	거래횟수
A주식	최한국	**3.10	10,000	**1.15	7,500	1
A주식	최한국	**3.10	10,500	**1.15	7,500	2
A주식	최한국	**3.10	9,500	**1.15	7,500	3

### 33. 손택스 간편신고 메뉴가 없는 사유?

○ 홈택스 개통 후 이용현황, 추가 개선사항 등 고려하여 추후 개발 예정임

## ▶ 기타사항

### 34.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 or 제84의4서식), 주식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서류<sup>1)</sup>, 주식거래내역서(별지 제84호의2서식), 대주주신고서<sup>2)</sup>(별지 제84호의3서식)

- 1) 자산 취득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화해비용,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명도비용 등
- 2) 직전 사업연도말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대주주에 미달하였으나, 당해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대주주가 된 경우 제출

### 35.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증권거래세 세율표 >

구분		'19.6.3.~ '20.3.31.	'20.4.1.~ '20.12.31.	'21.1.1.~ '22.12.31.	'23.1.1.~ '23.12.31.	'24.1.1.~ '24.12.31.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	증권거래세	0.1%	0.1%	0.08%	0.05%	0.03%
	농어촌 특별세	0.15%	0.15%	0.15%	0.15%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25%	0.25%	0.23%	0.20%	0.18%
코넥스	증권거래세	0.1%	0.1%	0.1%	0.1%	0.1%
K-OTC	증권거래세	0.25%	0.25%	0.23%	0.20%	0.18%
비상장상장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0.5%	0.45%	0.43%	0.35%	0.35%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 \*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의 2023년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 임

**3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 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함

**37.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 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할 수 있음

**38.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함

<홈택스·손택스 경로>



#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행정안전부, 2024. 8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토)이나, 기한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올해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월)까지임
-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연면적, 자본금액·출자금액, 종과 대상(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 등
  -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

- 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1 8월 주민세 개요

### < 8월 주민세 개요 >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2024년 납기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 원~20만 원 + (연면적) 250원/m <sup>2</sup>	8.1.~9.2.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이하(조례로 결정)	8.16.~9.2.

- 주민세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지)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	5만 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250원/㎡
법인	자본금액·출자금액	5~20만 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기타	5만 원		

-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납기)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지)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세율)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
- (징수방법) 보통징수\*
  -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
- (납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보니 ‘탈세단말기’

- 국세청, 2024. 8

-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sup>1)</sup>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sup>2)</sup> (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sup>3)</sup>,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 2) 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 3)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하여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습니다.

##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 |

①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

③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

□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사항

○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 도움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 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 |

- |   |
|---|
| ①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한 사례       |
| ②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
| ③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

□ 아울러,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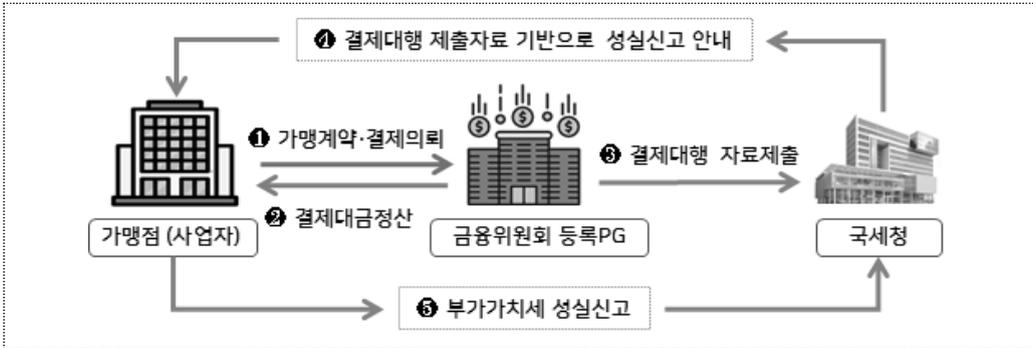
○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 당 0.022%, 연 8.0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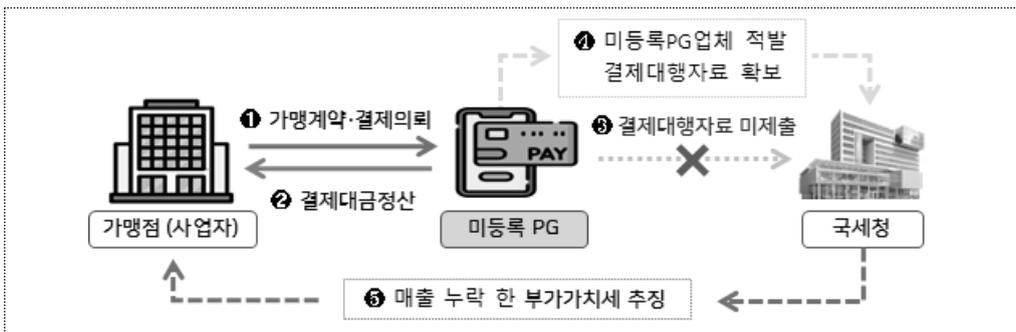
## 참고 1 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결제대행업체는 ①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결제를 대행, ②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 지급, ③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2)하고 있음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과 등록), 전자금융업 등록 후 영업
  - 2) 결제 대행 시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75조)
- 국세청은 ④ 결제대행자료를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⑤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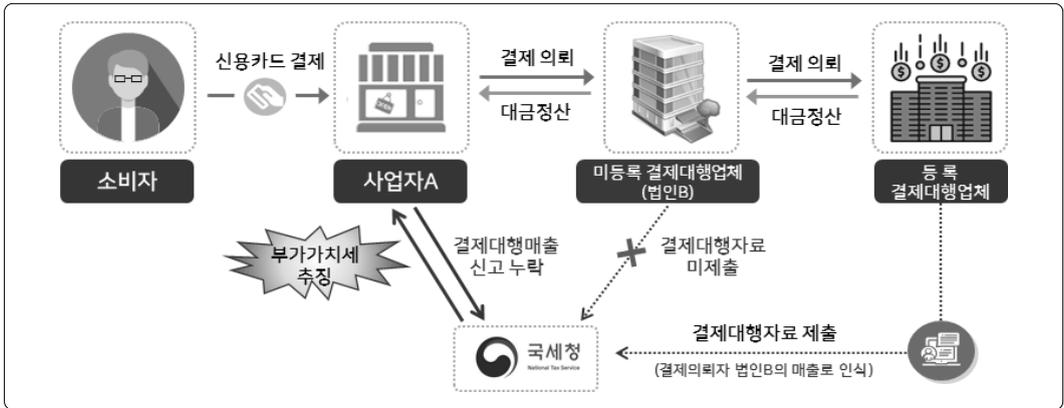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결제를 대행, ②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 지급, ③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음
  -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전자금융업)를 영위하는 업체
- 국세청은 ④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하여 ⑤매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또는 이에 응

하지 않는 경우 추정

## 참고 2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사례

### 사례 1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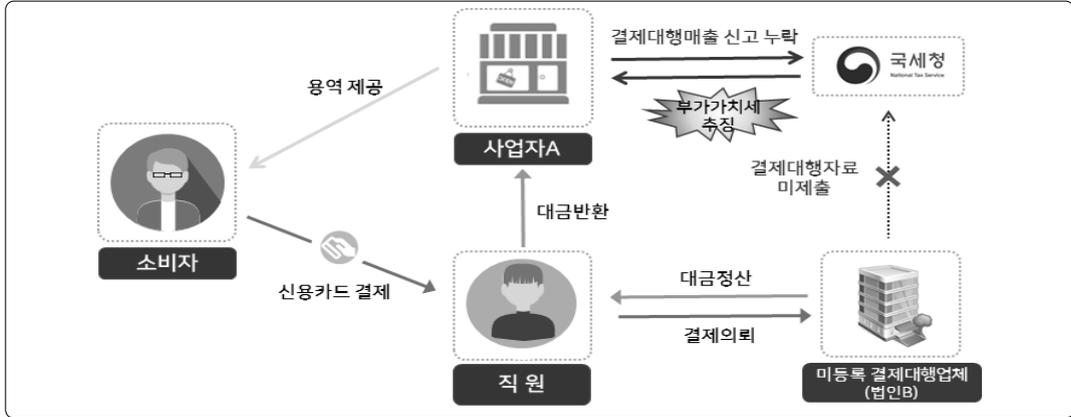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 음식점 영위 사업자 A는 ‘결제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정

□ 올바른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 이 경우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사례 2** 직원명의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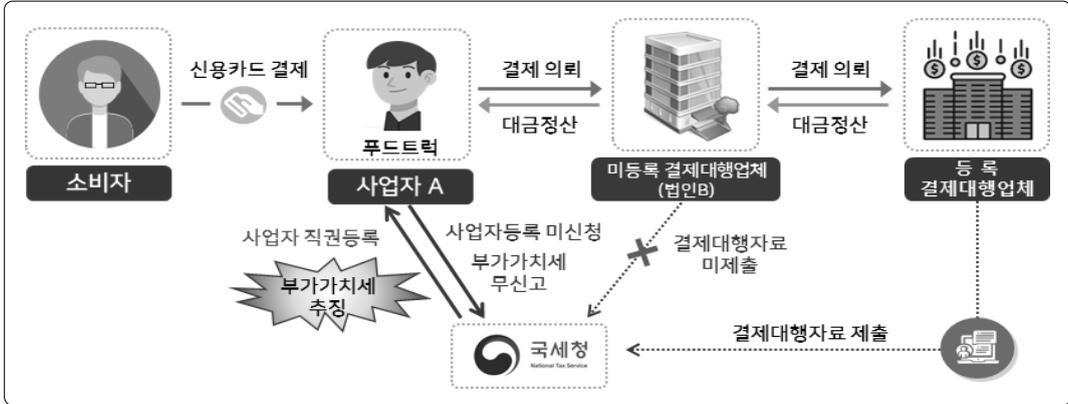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 헬스장 운영 사업자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방법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14조)
- 이 경우 매출 분산 목적으로 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자A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사례 3 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A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하여 지속적 마찰 발생
  -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함
-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A가 사업자 등록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자 직권등록 및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 올바른 신고방법

-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마다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 이 경우 사업자A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당시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국세청, 2024. 8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7.11.(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7.12.(금) 01:00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2차 수정안	11,150원 (2024년 대비 13.1% 인상)	9,900원 (2024년 대비 0.4% 인상)
제3차 수정안	11,000원 (2024년 대비 11.6% 인상)	9,920원 (2024년 대비 0.6% 인상)
제4차 수정안	10,840원 (2024년 대비 9.9% 인상)	9,940원 (2024년 대비 0.8% 인상)

이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였다.

구분	금액	인상률	제시 근거
하한선	10,000원	1.4%	① 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②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
상한선	10,290원	4.4%	<'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경제성장률(2.6%)① + 소비자물가상승률(2.6%)② - 취업자 증가율(0.8%)③

상한선	10,290원	4.4%	※ 국내 주요 기관의 평균				
			구 분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감	증가율 *
			기획재정부 (‘24.7. 「경제정책방향」)	2.6%	2.6%	+23만명	0.8%
			한국은행 (‘24.5. 「경제전망보고서」)	2.5%	2.6%	+26만명	0.9%
			한국개발연구원 (‘24.5. 「경제전망」)	2.6%	2.6%	+24만명	0.8%
평 균	2.6%	2.6%		0.8%			
* 취업자 증가율: 각 기관 '24년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 ÷ '23년 취업자수 (2,841.6만명, 통계청)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되었다.

\*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무효 0명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최종제시안	10,120원 (2024년 대비 2.6% 인상)	10,030원 (2024년 대비 1.7% 인상)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